

2023.4.12.(수)

민주연구원 정책네트워크실 Tel 02-2630-0150 /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 Tel 02-6788-3201  
박정식 정책네트워크실장 010-4222-3925 / 이원정 총괄팀장 010-5387-9680 / 김인아 보좌관(박주민 의원실) 010-3646-0626

## ≪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결과 브리핑 ≫

(6차) <특수고용노동자> 분야

### -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불안 위기 극복 대책 제안 -

2023.4.12(수), 오후 4시 40분,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

책임의원, 이학영 · 이수진(비례) · 어기구 · 박주민 의원 참석

-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총 8회)는 지난 1월 12일 이재명 당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9대 민생회복 프로젝트(#불임1 참조)’ 일환으로 당면한 민생 위기 극복 해법을 추가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원장 정태호 의원)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의원)가 공동 주최하고, 직능단체, 시민단체, 노동계, 학계 등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소속 39명의 국회의원이 정책과 입법과제를 전담 · 추진하는 ‘과제별(분과별) 책임의원(#불임2 참조)’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다.
- 오늘은 여섯 번째로 <특수고용노동자> 분야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불안 위기 극복 방안’을 주제로 종속적 계약관계 종사자들의 생존위기 심각성과 대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과제별 책임의원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발제 · 토론을 진행했다.

- 오늘 토론회에 앞서 지난 4월 3일 박주민 의원, 각 의원실 보좌진이 참여한 ‘책임의원 정책간담회(노동·고용1 분과)’를 열고 토론회 세부 토론 의제 및 정책입법과제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책임의원 정책간담회’와 오늘 토론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안된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 한 후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회복 정책입법과제」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를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게 제안하고, ‘과제별 책임의원’ 중심으로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죄선을 다할 것이다.
-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특수고용노동자’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특수’로 가려진 ‘종속적 계약관계’ 종사자들의 생존위기

- 1) 임금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중간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이하, 특고노동자)는 최소 165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플랫폼노동’과 같은 ‘특수고용’ 직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1]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종속적 계약자(dependent contractor)란 표현이 가장 정확한 개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특수’한 개념으로 잘못 쓰여지고 있다. 즉 특수고용노동자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계약 상대방에게 종속되어 일을 제공하는 계약자다.

[참고2] 2018년 노동연구원의 「특수형태근로(특수고용) 종사자의 규모추정을 위한 기초연구」에 의하면, 스스로를 ‘임금노동자’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특수고용 계약을 맺고 있는 노동자(종속적 근로관계의 노동자이나 ‘임금근로자’로 잘못 분류된 종사자)가 745,397명, 종속적 자영업자로 분류될 수 있는 종사자가 913,611명으로 ‘특고노동자’ 규모는 1,659,008명이다. 또한 전성 1인 자영업자는 아니면서 특수고용 종속성이 약한 ‘새로운 유형’의 종속적 계약자 550,335명을 포함할 경우 그 수는 2,209,343명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2011년 고용노동부 실태조사(130만명)와 비교하면 7년 새 100만명 가까운 특수고용 노동자가 늘어난 것이다. 플랫폼노동처럼 새로운 산업의 등장으로 특수고용 직종이 지속적으로 분화·증가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 2) ‘특고노동자’는 경기, 서울 등 대도시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40~50대 취업자가 대다수로 플랫폼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배달, 택배, 물류, 돌봄

등 필수 노동에 종사하고 있어 우리 경제활동의 중추를 책임지고 있다.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고노동자'는 산재, 고용보험 등의 기본적인 사회 보장에서도 사각지대에 있고, 근로시간 보호를 받지 못하여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와 산재 피해에 항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참고1]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김준영 외, 2021)에 따르면, 2020년 현재 플랫폼종사자의 30% 가량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현재 이용하는 플랫폼을 통해 가입하거나 임의가입 등을 통해 가입한 사람들은 그 중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산재보험 가입자 비율 역시 30% 가량에 머물고 있다.

[참고2] 최근 양대 노총의 조사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의 43.8%는 주 평균 6일을 일하며 주당 52시간을 넘게 일하는 경우가 55.4%로 나타나 특수고용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이 상당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의 주된 원인은 일감 대비 낮은 수수료와 관련되어 있다. 임금노동자와 비교하면 시간당 임금이 낮고, 특수고용노동자는 이를 더 많은 노동을 통해 보충해야하기 때문이다.

- 4) 1년에 20여명이 넘는 택배기사 과로사를 목격한 우리 사회의 비등한 여론으로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협약'이 만들어지기도 하였으나, 생존위기에 처한 '특고노동자' 보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양심적인 사회적 목소리가 재계의 산업경쟁력 논리에 밀려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5) 더구나 대기업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주로 '특수고용'을 적극 활용해 왔고 소규모의 작은 사업장에서도 그 활용 빈도가 매우 높다.

한국에서 특수고용과 플랫폼노동이 증가하게 된 이유는 새로운 일들이 만들어지고 기술진보 등의 영향도 있지만 주로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활용한 측면이 매우 크다. 조선산업 대기업들은 사내하청을 넘어, 물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 노동법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물량팀'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 6) 법원은 택배기사 노동조합 사례와 같이 '특고노동자'에 대해 노동조합

법상 노동자로 인정하고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으나, 작업조건이나 보수조건에 대한 교섭을 하지 못하여 낮은 수수료에 ‘근로빈곤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7) 결론적으로 한국은 이미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특고노동자’ 형태의 고용이 비대하다. 이를 방지하면 불안정 고용상태의 ‘특고노동자’가 급속하게 확대될 위기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새로운 유형의 ‘특수고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그에 맞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 2. 윤석열 정부에서 방치되거나, 오히려 공격받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1) 윤석열 정부 들어 ‘특고노동자’ 등 비정규직 관련 정책이 거의 전무하고 그동안 추진되었던 의미 있는 정책들도 중단되거나 후퇴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특고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의 확대 적용이 더 이상 계획되어 있지 않아 상당수의 ‘특고노동자’들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로 남게 될 수 있다. 14개 직종까지 확대된 산재보험 적용은 이후에도 확대·적용되어야 하나 추가 직종 발굴에 대한 계획은 뚜렷하지 않은 상태이다.

2) ‘특고노동자’는 ‘종속적 계약관계’ 종사자이고, 법적·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ILO와 같은 국제기구도 노동법의 보호영역에 ‘특고노동자’와 같은 종속적 계약관계 종사자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화물자동차 기사들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담합행위를 적용하여 처벌하겠다고 하는 등 이들의 열악한 처지를 이해

하고 보호정책을 고민하기 보다는 형사처벌의 논리로 맞서고 있다.

- 3) 윤석열 정부의 ‘특고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처는 세계적인 ‘특고노동자 대책’과는 정반대 방향이고 과거 100년 전으로 돌아간 역사적 퇴행이다.

이미 체결된 ‘사회적 협약’의 이행마저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어렵게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 낸 ‘안전운임제’는 거의 파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곳곳에서 멈추고 사회 전반적으로 정부의 편향적 지원에 힘입은 대결국면이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참고] 10년 전만 해도 ‘특수고용노동자’는 독립된 자영업자이니 알아서 해야지 어쩔 수 없다는 사회 분위기가 강했다. 하지만 ‘특고노동자’라는 추상개념으로 가려진 그 본질이 자신의 작업조건이나 거래조건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종속적 계약관계’ 종사자이고, 법적·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ILO와 같은 국제기구도 노동법의 보호영역에 ‘특고노동자’와 같은 종속적 계약관계 종사를 포함하고 있다.

[참고] 과거 150년 전 노동조합을 반독점법에 의해 담합행위로 처벌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노동조합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이 소득의 적절한 분배와 내수경제 활성화 등 사회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반성에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발전해 왔다.

### 3.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과제 제안

- 1) 먼저, ‘특고노동자’의 실태조사를 통해 그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실태조사에 나서도록 촉구하고 정부가 계속 외면한다면 국회 차원의 전면적인 ‘특고노동자’ 실태조사에 나서도록 견인하겠다.

2018년 이후 비대면 경제 확대로 배달, 택배 등 플랫폼 종사자가 급증하고 조선산업, 건설산업에서도 물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특고노동자’가 확대되는 등 새로운 유형의 ‘특고노동자’가 늘어났다. 그러나 2018년 노동연구원의 ‘특고노동자’ 실태조사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윤석열 정부는 실태조사마저 외면하고 있다.

노동자로 분류되어야 하나 오분류되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계층에는 노동법 보호를, 종속적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거래조건, 작업조건의 개선을 위한 단체협상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고용 형태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실태조사는 필수적이다.

- 2) 사실은 ‘임금근로자’인데 ‘특고노동자’로 계약이 잘못 체결되어 3.3% 사업소득세를 내고 있는 ‘오분류’(misclassification)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분류 문제를 법원의 판결에만 맡기지 말고 전문가들의 분석을 거친 행정해석을 통해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법원 판례상 노동법의 보호대상이라고 판단되는 56개 정도의 업종으로 소분류되어 있는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해야 한다.

법원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므로 노동위원회에 산하에 ‘(가칭)특수고용노동자 분류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특고노동자’ 분류 작업을 통해 오분류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

[참고1] 매년 노동자임에도 잘못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고노동자’에 대한 근로자 인정 판결이 잇따르고 있으나 법원의 판결까지 족히 3~4년은 걸리고 언제든지 부당해고 내지 거래거절의 상황에 있는 ‘특고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참고] 대법원 판례상 노동법의 보호대상이라고 판단되는 56개 정도의 업종으로 소분류 되어 있는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동조합법상 노동자 등으로 인정하는 조치나 행정해석을 내 놓아야 한다. 특히 법원이 택배기사나 방문점검원 사례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성은 인정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적극행정을 통해 최소한 단체교섭을 통해 거래조건, 작업조건을 개선하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참고2] 법원이 특고노동자에 대해 근기법 및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 : ▲2021.7. 대법원이 재활트레

이너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여 퇴직금 지급을 판결한 사례 ▲ 2022.2. 서울 고등법원이 KBS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 부당해고 구제를 판결한 사례 ▲ 2022.4. 대법원이 물류센터 모바일 서포터를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 부당해고 구제를 판결한 사례 ▲ 2022.6. 서울 행정법원이 온라인 배송기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사용자인 택배사에 단체교섭 응낙의무를 판결한 사례 ▲ 2022.7. 서울행정법원이 코웨이 코디(방문점검원)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사용자에 단체교섭 응낙의무를 판결한 사례 등

3) 플랫폼의 독과점 심화로 배달, 택배, 물류 등 플랫폼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종사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의 거래조건, 작업조건은 더욱 더 열악해지고 있다. 플랫폼종사자 노동조합이나 단체가 플랫폼 기업과 직접 단체교섭을 통해 거래조건, 작업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을 통해 노사 자율교섭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입법을 최종 완성함과 함께 현장에서 실질적인 단체교섭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적극행정’을 하도록 촉구하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이러한 교섭과 대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참고] 직접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지배하는 사용자는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판례가 잇따르고 있다. 택배기사나 방문점검원 등도 그러한 사례이다.

[참고] 현재 이러한 법원의 판례 추세를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지배하거나 영향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을 입법화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본 회의 통과를 통해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한다면 앞서 살펴본 많은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 윤석열 정부에서 멈춰 버린 ‘특고노동자’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확대 노력이 계속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필요하면 입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현재 14개 업종의 ‘특고노동자’에만 적용되고 있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특고노동자’ 업종 전반으로 확대할 것이다.

‘특고노동자’의 거래조건과 작업조건 개선을 위해 최소한 단체교섭이 허용되어야 하겠지만, 적어도 현대국가 시민들의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

## 되고 있는 사회보험에 대해서는 입법과 행정을 통해 필요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험법상의 근로자의 범위는 정책적 영역의 문제이고 세계적 추세는 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최대한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입법이나 판례가 발전해 왔고, OECD 주요 국가는 정책적으로 특수고용 노동자가 적어도 산재나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를 하고 있다. 택배, 배달기사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낮은 수수료를 장시간 노동으로 보충하고 있는 ‘특고노동자’들에 더 많은 산재와 실업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 5) 새로운 유형의 ‘특고노동자’가 다양하게 등장하면서 일일이 입법과 행정해석을 통해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협상권 인정 여부를 정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법적 교섭이 아니더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 민주당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문체부, 중기부 등 법정부 협력행정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특고노동자’ 업종 분야 에서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직접 지원하는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참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용자와 특고 노동자 노동조합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거래조건 개선이나 과로사, 과로운전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는 성공적 사례들이 다수 있었다.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는 택배사나 택배대리점, 택배노동조합 사이의 단체교섭을 통해서 해결이 어려워 화물주 단체와 소비자단체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행정기관이 모두 모여 무려 1년여의 장기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과로사를 초래하는 공짜노동으로 비난받았던 택배화물 분류작업에서 택배기사를 벗어나게 하거나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심야작업 금지, 산재와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등을 합의하도록 하였다. 그 전에 화물자동차 기사들의 과로운전으로 대형 인명사고가 잇따르자 다단계 도급구조를 해결하고 화물기사들이 과로에 내몰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사회적 합의도 있었다.

## [붙임1] 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 “9대 민생회복 프로젝트” (2023.2.27. 현재)

| 목표                     | 9대 민생<br>프로그램(상임위)                                | 세부내용 및 추진 방안  | 대책<br>['23 예산]  | 수혜 대상                                   |
|------------------------|---|---|---|---|
| 합계                     |   |   |   | 예산 : 30조원 수준                            |
| 高금리<br>피해 회복           | ① 저신용자<br>신용대출 확대<br>(정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실 위험이 있는 저신용 저소득층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 대출 지원</li> <li>- (개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민금융법 제47조 제2항 단서 추가를 통해 서민금융보완계 정의 은행 출연비율 하한을 설정</li> <li>→ 이 경우 현재 은행 출연비율 0.03%→0.03% 상향하여 시중에 약 7,000억원 추가 자금 조달 효과 발생</li> </ul> </li> </ul> | 입법: 서민금융법<br>→ 0.7조원 대출<br>효과<br>예산: 0.1조원                        | 저신용자                                    |
|                        | ② 중소기업·<br>자영업자 이자<br>감면<br>(정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 방역 기간인 2020.3.~2022.3 사이의 중소기업, 자영업자 부채 증가분에 대한 1.5% 이자 지원</li> </ul>  | 예산: 7.4조원   | 1. 가계<br>2. 자영업자<br>3. 중소기업             |
|                        | ③ 소상공인·<br>자영업자 고정비<br>감면 지원<br>(중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임대료 등 고정비대출 및 지원</li> <li>- (입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로 지원법)</li> </ul>   | 입법: 자영업자<br>임대로 지원법<br>예산: 3조원                                    |   |
|                        | ④ 취약 차주<br>저금리 전환 대출<br>(정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채이자 감면 프로그램 예산 내에서 한계 차주 저금리 전환 대출 지원 재원 확보</li> </ul>  | 예산: 1.5조원   |   |
| 高물가,<br>에너지요금<br>부담 경감 | ⑤ 에너지<br>물가지원금<br>(복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가상승 피해계층 중심의 하후상박형 지원</li> </ul>  | 예산: 7.2조원   | 소득하위 80%<br>4,117만명                     |
|                        | ⑤-1<br>소상공인·자영업<br>자 난방비(가스 및<br>전기요금) 지원<br>(중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상공인 대상 가스요금 및 전기요금 지원 (1안 30만원, 2안 40만원)</li> <li>- (입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 에너지지원법)</li> </ul>  | 입법: 소상공인<br>에너지지원법<br>행사: 간담회<br>예산:<br>(1안) 2.03조원<br>(2안) 2.7조원 | 소상공인·<br>자영업자<br>676만<br>(무점포소매업<br>제외) |
|                        | ⑤-2 농업<br>난방비(전기 및<br>전기요금) 지원<br>(농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원예 농가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확대</li> <li>- 육계 총가 난방비 지원</li> <li>-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 차액지원(어업포함)</li> </ul>   | 997억원<br>262억원<br>0.2조원   | 원예농가 5만호<br>육계농가 0.3만호<br>농가 196.4만호    |
|                        | ⑥ 지역화폐 예산<br>증액 및 제도화<br>(행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발행 의무화, 지원사항 의무화)</li> </ul>  | 입법: 지역사랑<br>상품권법 개정<br>예산: 0.7조원                                  | 전국민                                     |

| 목표    | 9대 민생<br>프로그램(상임위)                  | 세부내용 및 추진 방안  | 대책<br>['23 예산]                                   | 수혜 대상   |
|-------|-------------------------------------|---|--|---|
| 주거 안정 | ⑦ 미분양 주택<br>매입 후 공공임대<br>전환<br>(국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호당 1.6억~3억의 최대 95%를 출자·융자하는 매입임대사업 10가지를 시행중임</li> <li>- 2023년도 매입임대예산은 총 6조763억원이며 전년 대비 3조797억원 감액됨</li> <li>- 미분양 등 매입임대사업 5조원을 추가 집행할 경우, ①기존사업으로는 32,885호 매입가능, ②「공동주택실거래가지수」(22.11월) 시가기준으로 서울(40㎡) 12,837호, 수도권(40㎡) 21,053호, 지방(40㎡) 65,790호의 추가매입 가능. 전국 부실·미분양주택 25%를 구제 효과</li> </ul> | 예산: 5조원  | 무주택자  |
|       | ⑧ 전세 보증금<br>이자 지원<br>(정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주택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이자에 대해서 1.42~2.78% 이자지원</li> <li>- 23년 예산 지원대상 17.6조원에서 1.4조원 추가 확대(23년 국회예산심의시 2.0조원 기획대)</li> </ul>   | 예산: 279억원  | 무주택 저소득층<br>(전세자금 대출)                         |
|       | ⑨ PF 배드뱅크<br>설립<br>(정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분양 및 부실채권 대책 (비은행권 PF 정상화)</li> <li>- 부실기업 정리가 아닌 정상화가 목적</li> <li>- (입법)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li> </ul>  | 입법: 자산관리<br>공사법 개정<br><br>행사: 세미나<br><br>예산: 2조원 | 1.중소 건설사<br>2.제2금융권<br>3.전국민*<br><br>*금융안정 측면 |

## [붙임2] ‘과제별(분과별) 책임의원’ 신청 현황 (총 39명)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책임의원 신청 현황 (2023.3.2.현재)

| no                | 국회의원   | 비고     | no                     | 국회의원   | 비고     |
|-------------------|--------|--------|------------------------|--------|--------|
| <1차> 총론(3/8)      |        |        | <5차> 소상공인(4/5)         |        |        |
| 1                 | 박주민    | 좌장     | 1                      | 서영교    | 좌장     |
| 2                 | 김영배    | 간사(토론) | 2                      | 이동주    | 간사(토론) |
| 3                 | 우원식    |        | 3                      | 김경만    |        |
| 4                 | 민병덕    |        | 4                      | 김주영    |        |
| 5                 | 정태호    |        | 5                      | 민병덕    |        |
| 6                 | 홍기원    |        | 6                      | 박주민    |        |
| <2차> 금융(3/15)     |        |        | 7                      | 윤영덕    |        |
| 1                 | 박주민    | 좌장     |                        |        |        |
| 2                 | 민병덕    | 간사(토론) | <6차> 노동/고용1-특고(4/12)   |        |        |
| 3                 | 김성주    |        | 1                      | 이학영    | 좌장     |
| 4                 | 신동근    |        | 2                      | 이수진(비) | 간사(토론) |
| 5                 | 오기형    |        | 3                      | 어기구    |        |
| 6                 | 양경숙    |        | 4                      | 최인호    |        |
| 7                 | 이동주    |        |                        |        |        |
| <3차> 주거·부동산(3/22) |        |        |                        |        |        |
| 1                 | 전혜숙    | 좌장     | <7차> 노동/고용2-문화예술(4/19) |        |        |
| 2                 | 조오섭    | 간사(토론) | 1                      | 홍익표    | 좌장     |
| 3                 | 박상혁    |        | 2                      | 유정주    | 간사(토론) |
| 4                 | 서동용    |        | 3                      | 김승원    |        |
| 5                 | 윤준병    |        | 4                      | 소병훈    |        |
| 6                 | 이수진(지) |        | <8차> 노동/고용3-돌봄(4/26)   |        |        |
| 7                 | 홍기원    |        | 1                      | 남인순    | 좌장     |
| <4차> 중소기업(3/29)   |        |        | 2                      | 최혜영    | 간사(토론) |
| 1                 | 정태호    | 좌장     | 3                      | 권인숙    |        |
| 2                 | 김경만    | 간사(토론) | 4                      | 서영석    |        |
| 3                 | 김교홍    |        |                        |        |        |
| 4                 | 김한정    |        |                        |        |        |
| 5                 | 이용빈    |        |                        |        |        |
| 6                 | 이용선    |        |                        |        |        |
| 7                 | 이원욱    |        |                        |        |        |
| 8                 | 이장섭    |        |                        |        |        |